

ITS 및 건설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 MOU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서는 한국수출입은행, 해외건설협회, ITS Korea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간의 ITS 및 건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, 수출증대, 관련교육의 상호 업무협력 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협력분야)

각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국내외 프로젝트 및 사업 발주 정보 공유
2.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컨설팅
3. 해외 진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
4. 국내외 전시상담회 및 세미나의 개최, 무역사절단 파견 등 각 기관의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 및 홍보 지원
5. ITS/건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타 활동
6. ITS/건설 관련 교육을 위한 강사 및 전문가 지원

제 3 조 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각 기관은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
- ②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4 조 (비용부담)

협력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각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실무협의회에서 각 사업별로 협의를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

각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한해 외부에 발표 또는 제공할 수 있다.

제 6 조 (협의조정)

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 7 조 (협약의 변경)

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은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, 각 기관의 동의를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8 조 (협약기간)

- ① 본 약정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② 본 약정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통보가 있을 경우 협의하에 협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각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. 6. 7.

해외건설협회 회장

이 재 균

이 재 균

ITS Korea 회장

류 철 호

류 철 호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

조 환 익

조 환 익

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

김 용 환

김 용 환